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
1권 1과목 17p 더 알아보기 (3) 원천징수 대상	문제-본문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원납적 원천징수 (분리과세 대상을 말함)</td> <td>예납적 원천징수 (분리과세가 아닌 경우 - 종합과세 대상을 말함)</td> </tr> <tr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분리과세 대상의 이자소득, 배당소득·분리과세 연금소득(1,200만 원 이하는 저율분리과세, 1,200만 원 초과는 15% 분리과세를 선택) 분리과세 기타소득 (연간 300만 원 이하는 선택) 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원납적 원천징수 (분리과세 대상을 말함)	예납적 원천징수 (분리과세가 아닌 경우 - 종합과세 대상을 말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분리과세 대상의 이자소득, 배당소득·분리과세 연금소득(1,200만 원 이하는 저율분리과세, 1,200만 원 초과는 15% 분리과세를 선택) 분리과세 기타소득 (연간 300만 원 이하는 선택) 	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원납적 원천징수 (분리과세 대상을 말함)</td> <td>예납적 원천징수 (분리과세가 아닌 경우 - 종합과세 대상을 말함)</td> </tr> <tr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분리과세 대상의 이자소득, 배당소득·분리과세 연금소득(1,500만 원 이하는 저율분리과세, 1,500만 원 초과는 15% 분리과세를 선택) 분리과세 기타소득 (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가능) 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원납적 원천징수 (분리과세 대상을 말함)	예납적 원천징수 (분리과세가 아닌 경우 - 종합과세 대상을 말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분리과세 대상의 이자소득, 배당소득·분리과세 연금소득(1,500만 원 이하는 저율분리과세, 1,500만 원 초과는 15% 분리과세를 선택) 분리과세 기타소득 (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가능) 	
원납적 원천징수 (분리과세 대상을 말함)	예납적 원천징수 (분리과세가 아닌 경우 - 종합과세 대상을 말함)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분리과세 대상의 이자소득, 배당소득·분리과세 연금소득(1,200만 원 이하는 저율분리과세, 1,200만 원 초과는 15% 분리과세를 선택) 분리과세 기타소득 (연간 300만 원 이하는 선택) 											
원납적 원천징수 (분리과세 대상을 말함)	예납적 원천징수 (분리과세가 아닌 경우 - 종합과세 대상을 말함)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분리과세 대상의 이자소득, 배당소득·분리과세 연금소득(1,500만 원 이하는 저율분리과세, 1,500만 원 초과는 15% 분리과세를 선택) 분리과세 기타소득 (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가능) 											
		수정 사유	경오사항으로 인한 내용교체								
1권 1과목 23p 더 알아보기 (3), ②	문제-본문	② 배당세액공제의 절차 • 총 배당소득금액 = 배당소득 + 간주배당 (배당소득 × 11%)	② 배당세액공제의 절차 • 총 배당소득금액 = 배당소득 + 간주배당 (배당소득 × 10%)								
1권 1과목 55-2p 더 알아보기 (2)	문제-본문	(2) 기타의 비과세 상품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분</td> <td>조합출자금</td> </tr> <tr> <td>납입한도</td> <td>1인당 1,000만 원 이하</td> </tr> </table>	구분	조합출자금	납입한도	1인당 1,000만 원 이하	(2) 기타의 비과세 상품 <table border="1"> <tr> <td>구분</td> <td>조합출자금</td> </tr> <tr> <td>납입한도</td> <td>1인당 2,000만 원 이하</td> </tr> </table>	구분	조합출자금	납입한도	1인당 2,000만 원 이하
구분	조합출자금										
납입한도	1인당 1,000만 원 이하										
구분	조합출자금										
납입한도	1인당 2,000만 원 이하										
		수정 사유	경오사항으로 인한 내용교체								
2권 3과목 202p 더 알아보기 (3), ②	개념,공식-설명	② 기업공개 시 주식의 배정 우리사주조합원에 20% 배정 → ~ → 코스닥시장형 벤처기업 투자신탁에 30% 이상 배정 → 참여수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	② 기업공개 시 주식의 배정 우리사주조합원에 20% 배정 → ~ → 코스닥시장형 벤처기업 투자신탁에 25% 이상 배정 → 참여수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								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